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사건의 표시

사 건 번 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150 손해배상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 강종구 외 19명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박서진, 박휘영,

문철주, 김지은, 백승재, 진철법률사무소 변호사 진철

피 고 : 동양증권 주식회사 외 10

2. 총원의 범위

2012. 3. 1.부터 2013. 9. 30.까지, ①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② 주식회사
동양레저가 발행한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STB), ③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STB), ④ 동양시멘트 주식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⑤ 티와이석세스 제일차 주식회사, 티와이석세스 제
이차 주식회사, 티와이석세스 제삼차 주식회사, 티와이석세스 제육차 주식회
사, 티와이석세스 제칠차 주식회사, 티와이석세스 제팔차 주식회사, 티와이석
세스 제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를,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지급한 금전등의 총액이 매수한 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한 자.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1) 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각자 총원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추후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피고들은 공모하여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각 동양그룹 계열사 명의로 거액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분식회계, 회계부정,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통하여 소위 ‘그룹 지원’을 통해 CP·회사채 등을 정상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룹 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총원에게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CP, 회사채 등을 사기판매한 뒤, 전격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부도를 냄으로써 총원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것으로 제179조에 의하여 총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2014. 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판사 오영준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법원주사보 최정아

* 전화 : 02-530-1460 팩스 : 02-3477-8107